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창열 의원)

의안 번호	535
----------	-----

발의연월일: 2026년 2월 13일

발 의 자: 이창열 의원

찬 성 자: 이은미, 김성기, 심현정의원

1. 제안이유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설치를 포함한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 사업과 예산 지원에 대한 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 소득 증대와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책무(안 제3조)
- 사업 등(안 제4조)
- 체험비 지원 등(안 제5조)
- 지도·감독 및 평가(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6. 2. 5. ~ 2026. 2. 12.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평창군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체험비”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회 및 사업자의 운영 지원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체험·숙박·안전시설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체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농촌체험·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기관

③ 체험비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지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

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략)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체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농촌체험·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기관
- ③ 체험비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 참고: 춘천시 휴양마을 체험비 지원사업(예산액 30,000천원, 인당 5천원, 총 6천 명 지원)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용하
연락처	(033) 330 - 1302